

第 19 回 臨時會

2005. 9. 29(木)

檢 討 報 告 書

계룡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(안)

鷄 龍 市 議 會

專門委員 金 泳 鎮

계룡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(안)

檢 討 報 告

□ 制定背景

- 노사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 내의 근로자·사용자 및 계룡시가 신뢰와 협조를 바탕으로 노동정책 및 이와 관련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함.

□ 主要内容

- 지역내 노사정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, 노사관계 안정 및 화합증진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함(안 제2조)
-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동수로 함(안 제3조)
-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,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소집함(안 제6조)
- 협의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당사자·관계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의 출석 및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음(안 제9조)

□ 檢討意見

- 본 제정 조례안은, 노사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을 근거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, 동법 제19조에서는 “~지역노사정협의회를 둘 수 있다”고 규정되어 있는데, 타 자치단체의 경우 지역노사정협회의 설치에 일반적인 경우가 아닌 점을 감안할 때, 본 조례의 제정의 당위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,

- 조례안 제12조(수당 등)에서 “협의회 위원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~”는 조례의 전반적인 내용을 통해 볼 때 “협의회와 특별협의회 그리고 실무협의회 위원 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~”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며,
- 조례안 제8조의 특별협의회의의 경우, 타 자치단체에서는 살펴보기 드문 것으로, 이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운용의 묘를 살려야 할 것으로 사료됨.